

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0. 19(월)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9. 14.

나. 제안자 : 김용근·윤지상·박창규 의원 외 14인

다. 회부일자 : 2009. 9. 14.

라. 상정일자 : 2009. 10. 13(제177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)

- 제안설명 : 박창규 의원
- 검토보고 :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수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, 효행, 선행, 면학, 장애극복, 예·체능 등 수상 부문을 선정하도록 함.(안 제2조).
-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, 학교장,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함.(안 제3조).

- 시장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전까지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4조).
- 시장은 매년 1회로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도록 함.(안 제5조).
- 동일공적으로 기 수상한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함.(안 제8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·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용근·박창규·윤지상위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 임.

□ 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별 내용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수상대상자를 『청소년기본법』 제3조제1호에 의해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¹⁾하고, 수상부문은 대상·효행부문·선행부문·면학부문·장애극복부문·예체능부문 등 총 6개 부문의 종류로 구분하여 별 다른 의견 없음. 다만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수상대상자) ①생략 1. ~ 6. 생략 ②수상인원은 제1항 제1호의 대상 1명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부문별 부문상 1명을 선정하며,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	제2조(수상대상자) ①제정안과 같음 1. ~ 6. 제정안과 같음 ②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되,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

1) 『청소년기본법』 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청소년"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
□ **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 구성(안 제4조)**

- 안 제4조는 매년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청소년 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함. 현행 『지방자치법』 제116조의2제2항²⁾은 유사위원회에서 업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우리시는 청소년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 위원회에서도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※ **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현황 (위원회 기능 별지 붙임)**

위원회명	설치일	설치근거	소관부처	위원회 성격 (심의.자문 /의결)	위원수					구 성 (당연직 포함)			위원장 선 출		개최 횟수
					계	당연직	위촉직			소계	남 (58%)	여 (42%)	직위	선임 방법	
							공무원	민간 위원	소계						
청소년 육성위원회	06.02.1	청소년기본법 제11조	아 동 청소년과	심의,자문	12	5	7	0	7	12	7	5	행정 부시장	당연	1 0

□ **시상시기 규정(안 제5조제1항)**

- 안 제5조제1항은 수상대상자를 매년1회 선정하여 수상하도록 규정함. 『청소년기본법』 제16조는 청소년의 달을 매년5월로 규정하고 있어 시상 시기를 연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같은 조 제2항은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안 제10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시상) ①청소년대상은 <u>매년1회</u>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<u>표창장, 메달 및 부상</u> 을 수여한다. ② <u>생략</u>	제5조(시상)청소년대상은 <u>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</u> 시상한다. ② <u>삭제</u>

2) 제116조의2 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9.4.1]

□ 조례의 시행 시기(부칙)

본 조례의 시행 시기는 안 제5조의 부상 등은 공직선거법 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)제3항³⁾을 감안하여 2010년 7월 1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를 수정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.

제 정 안	수 정 안
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	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련자료】

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

□ 큰 거

- 청소년기본법 제11조 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
- 인천광역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(설치와 구성)

□ 위원회 구성현황

- 구성인원 : 12인(명단 별첨)
 - 당연직 위원 (5인)
 -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(위원장), 여성복지보건국장
 -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
 - 인천지방검찰청 소년1담당검사
 -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

3) 공직선거법 86조 3항 :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4.3.12, 2005.8.4>

- 위촉직 위원 (7인)

청소년 및 시의원, 교육자, 청소년단체, 청소년지도자
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
 시장이 위촉

□ 위원회 기능 ▷ 인천시 청소년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

-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-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과 협조
-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·관리와 지원
-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
-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
-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

□ 위원회 운영

- 회의
 - 정기회 : 년 1회 개최
 - 임시회 : 필요한 사항 발생시

인천시 청소년대상 표창 내역 현황 자료

소 관 부 서	수 상 내 역	년 도 별 수 상 인 원			훈 격	표 창 대 상 자 용 내 용
		2009	2008	2007		
사회복지봉사과	자원봉사자	4	13	8	시장	모범자원봉사자
아동청소년과	모범청소년	21	22	23	시장	청소년일달기념(5일) 모범청소년표창
	모범청소년		37		시장	청소년금연 건강마라톤대회
	청소년자원봉사우수단체	3			시장	봉사활동우수학교 3개
	어린이날기념 모범어린이표창	255	265	242	시장	어린이날기념 모범어린이표창
노인청소년과	효행청소년	5	9	7	시장	효행대상자 (어린이날기념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이명숙, 최만용, 박창규, 오홍철, 이병화, 정종섭, 최병덕 위원
 - 대상 및 부문별 1명으로 되어있는데 수상인원 확대 방안 및 다수에게 수상을 할 경우 大賞이라는 제목부터 수정검토 필요
 - 안에서 청소년 연령기준을 9세부터 24세로 규정하되, 사유와 타당성은?
 - 교육청에서도 각종 수상을 하고 있는바 중복성 여부 및, 인천광역시 시민상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받은 사례가 있는지?
 - 안 제7조 중 “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”는 현재 자료 대부분이 CD나 DVD 등 간편한 관리방법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삭제 검토

< 답 변 >

- 박창규 의원,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
 - 모범 청소년 다수에게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.
 - 『청소년기본법』 제3조제1호에 근거한 청소년 연령 기준임.
 - 시민상 부분에서는 청소년이 수상사례는 없으며, 가능하면 동일공적으로 중복 시상되는 사례는 지양되고 있다고 사료됨.
 - 대장의 의미는 단순 종이문서 의미 보다는 전반적인 영구보존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문 안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

나. 반대 : 최만용, 박창규, 오홍철, 이병화, 정종섭, 최병덕 위원

6. 수정안 요지

- 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 별로 1명을 선정하되,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

- 안 제4조를 삭제한다.
-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.
-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제4조(시상) 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한다.
-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7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 (재석의원 찬성 : 6명)

8. 기타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청소년 대상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청소년 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청소년 대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 별로 1명을 선정하되,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

안 제4조를 삭제한다.

안 “제5조부터 제10조까지”를 “제4조부터 제9조까지”로 하며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시상) 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수상대상자) ① (생략) 1. ~ 6. (생략)</p> <p>② 수상인원은 제1항 제1호의 대상 1명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부문별 부문상 1명을 선정하며,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4조(위원회) ① 인천광역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전까지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해야 한다.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5조(시상) ① 청소년대상은 매년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,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. ② (생략)</p> <p>제6조 (생략) 제7조 (생략) 제8조 (생략) 제9조 (생략) 제10조(생략)</p>	<p>제2조(수상대상자) ① (제정안과 같음) 1. ~ 6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되,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>제4조(시상) 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한다.</p> <p>제5조 (제정안 제6조와 같음) 제6조 (제정안 제7조와 같음) 제7조 (제정안 제8조와 같음) 제8조 (제정안 제9조와 같음) 제9조 (제정안 제10조와 같음)</p>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, 효행, 선행,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상대상자)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(이하 "청소년대상"이라 한다)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.

1. 대상 :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, 선행, 노력 등 여러면에서 성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.
2. 효행부문 :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자.
3. 선행부문 :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자.
4. 면학부문 : 역경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
5. 장애극복부문 :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
6. 예체능부문 : 각종 예술·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자

② 수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되,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, 학교장,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한다.

제4조(시상) 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한다.

제5조(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)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.

제6조(기록 보존)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, 공적사항,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중 포상금지)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8조(수당 등)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